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4071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에스엔

담당변호사 이회덕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수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802,79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2015. 8. 11.자, 2015. 8. 17. 자 물품구매계약을 각 3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된 계약 체결

1) 원고는 LAN, WAN 전산장비 및 통신부자재 판매업,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련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E은 그 대표이사이다.

2) 경기지방경찰청은 2015. 1. 29. '경기지방경찰청 광대역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위 재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경기지방경찰청과 기술협상을 진행하였고, F는 2015. 4. 27. 경기지방경찰청과 공사대금 16,289,000,000원에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F는 2015. 6. 1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업 중 네트워크 장비 설치 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금액 6,921,9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5. 8. 11. 피고와 이 사건 용역 중 IP/보안장비 납품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다시 2015. 8. 17. D와 사이에 위 IP/보안장비 납품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발주자	공급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대금지급방법
C	피고	G의 건	2015. 7. 29. ~ 12. 31.	802,799,800 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 및 설치, 검수 완료 후 100% 지급
피고	D	G의 건	2015. 7. 29. ~ 12. 31.	769,799,800 원(부가가치 세 포함)	선금금 : 3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금지금 잔금 : 검수완료 후 지급

4) 한편, D는 2014.경부터 F와 함께 이 사건 사업참여를 준비해왔는데, F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게 되자 F로부터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사업권을 수주하여 각 업체에게 용역업무를 분담해주는 역할인 속칭 ‘마더 업체’의 역할을 자처하며 C, 피고 등과 함께 네트워크 설비인 HP장비 납품을 위한 작업을 하였다.

5) D는 F와 경기지방경찰청 사이의 기술협상에 참여하면서 경기지방경찰청에 네트워크 설비로 HP장비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경기지방경찰청은 기술협상 과정에서 HP장비가 아닌 시스코 장비를 채택하였고, 시스코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였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D와 원고는 2015. 6. 16. 대금을 3,22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기간을 2015. 6. 15.부터 2015. 12. 1.까지, 대금 지급조건을 ‘보안장비 납품 및 설치, 인검수 완료 후 100%, 원청 대지급기준에 의함’ 및 ‘완료 후 현금(원청 수금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의 G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 D와의 위 가의 5)항 계약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 네트워크 장비 등을 납품 · 설치하였다.

나. 당사자들 간 대금 지급

1) F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검수를 받은 다음 2015. 12. 10. C에 약정한 대금 7,614,172,5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15. 12. 23. 피고에게 802,799,8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는 D에게 C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인 2015. 8. 19. 선급금 명목으로 330,000,000원, 같은 해 12. 28. 나머지 금액 439,799,800원을 지급하였다.

3) D는 2015. 12. 14.부터 2016. 5. 2.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11억 6,1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남은 20억 6,8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관련 소송

1) 원고는 2017.경 D와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9. 10. 23. ‘D는 원고에게 644,59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2. 3. 항소기각되어 202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53854).

2) 한편 E은 2017.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398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9. 2. 14. ‘E이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예견하지 못한 경영상 위험이 실현된 결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와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위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노73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12, 13, 15, 23호증, 을 제1 내지 3, 13,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D는 피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C와 피고 간, 피고와 D 간 허위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당사자 간에 실제로 물품을 구매할 의사 없이 체결된 계약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802,799,8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802,79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F에서는 H에 네트워크 장비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검수를 한 이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D가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먼저 H으로부터 지급받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H와 D간 직접적 계약이 아닌 위 둘 사이에 피고도 계약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 즉 H → 피고 → D 간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D에게 H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기 이전에 선금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는 각 당사자간 실제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 아니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라 함은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41889 판결 등 참조), 만일 표시된 외관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려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합치가 있다면 이를 통정허위표시로 의율할 수는 없다. 또한 통정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가장행위’라

하고, 가장행위에 의하여 숨겨진 법률행위로서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욕한 법률효과를 지향하는 행위를 ‘은닉행위’라 하는데, 이러한 은닉행위는 허위표시가 아니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일명 마더 업체로 계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F와의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C이 F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용역 업무 중에서 보안장비의 설치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 즉 네트워크 장비 설치 업무는 하도급을 주었는데, 경기지방경찰청에서 HP장비가 아닌 시스코 장비를 채택하면서 피고가 장비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D로서는 피고에 대해 일정 부분의 수익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H은 F로부터 용역 계약의 대금을 장비 설치 완료 및 검수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D는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 장비 검수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D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F에서 검수가 완료되기 이전, 그리고 피고가 H으로부터도 금액을 받기 이전에 3억 3,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물품구매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려면, 물품을 설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진의 없이 외형상으로만 위와 같은 표시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표시행위에 따른 효력(대금 지급 및 물품 납품 및 설치)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는 이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물품구매계약의 당사자가 될 필요성이 있었고 H은 피고에게, 피고는 D에게 각각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수익금 3,300만 원을 지급해주기 위하여 H과 피고 사이, 피고와 D

사이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각 물품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나 경제적 목적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물품구매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물품대금의 지급 등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효력을 부인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H으로 물품의 실물이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H과 피고 간, 피고와 D 간의 거래를 허위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단순히 3,300만 원을 지급받고 H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D에 전달하는 방식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도 이 사건 용역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H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D에게 선금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네트워크 장비를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H과 피고 사이, 피고와 D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을 허위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H 및 D도 네트워크 장비를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닌 원고를 통해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였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과 피고 간 체결된 계약은 C이 D에게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체결된 가장행위라고 하더라도, H이 D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나 적어도 H에서 피고를 통하여 D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려는 내심의 의사합치는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는 이상 D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면적 은닉행위는 허위표시가 아니므로 민법 제108조에 의해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C과 피고 간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외형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유효한 내면의 은닉행위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D에 2,068,000,000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는 C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피고와의 계약을 통해 지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H과 피고 사이에, 피고와 D 사이에 각각 체결하였다. 위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D는 실제로 C으로부터 받아야 할 802,799,8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후, 피고로부터는 769,799,800원만을 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33,000,000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당시 D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와 D는 이러한 허위 계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33,000,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었으므로, H와 피고 간의 물품구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3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9857)에서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이 위 신청에 따라 2018. 3. 30. 서증조사 협조의뢰에 관한 회신을 작성하여 E에 대한 수사기록[원고가 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송부하였다. 원고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서 위 수사기록을 여람하였으므로 늦어도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서증조사 협조의뢰에 관한 회신이 작성된 2018. 3. 30. 무렵1) 에 D가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H와 피고, 피고와 D간 물품구매계약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D나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제척기간 도과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에서 2018. 3. 14.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서 송부한 E에 관한 수사기록이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에서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분담을 알 수 있는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물품구매계약서 등에 대해 등사를 허가하지 않고 고소인 의견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에 대해서만 등사를 허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송부된 수사기록만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이 어떻게 체결된 것인지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2018. 3. 30. 위 물품구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와 H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피고와 H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아닌 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의 채무자인 D의 법률행위가 아닌, 피고와 H 사이의 법률행위인 물품구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2)

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정한, 판사 서지원, 판사 권가희

1)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시점에 대해 준비서면에서 여러 날짜를 언급하면서 늦어도 2018. 3.

30. 무렵에는 원고가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2020. 7. 2.자 준비서면 5쪽)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원고는 2015. 8. 17.자 구매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는 피고와 D 간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피고와 C 간의 계약이라고 하였다.